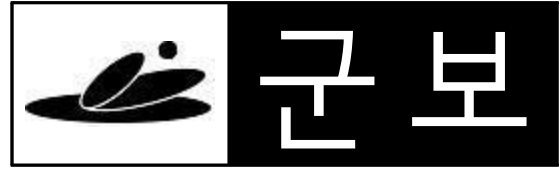


예 산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제662호 2022. 5. 16.(월)

고 시

- 예산군 고시 제2022-68호 : 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(해제) 및 지형도면 고시 1
- 예산군 고시 제2022-78호 :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 4
- 예산군 고시 제2022-80호 : 주택건설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고시(내포신도시 RH-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) 5
- 예산군 고시 제2022-82호 : 주택건설사업계획 5차변경승인 고시(내포신도시 RH-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) 7

공 고

- 예산군 공고 제2022-953호 :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
- 예산군 예산읍 공고 제2022-21호 :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8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예산군 고시 제2022 - 68호

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(해제) 및 지형도면 고시

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(해제) 사항에 대하여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4조 및 같은 법 제18조(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)에 따라 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15일

예 산 군 수

1.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: 예산 개발촉진지구
2.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: 예산군 일원(1읍5면, 28리) 35.60km²

- 당 초

구 분	행정구역 면적(km ²)	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		대 상 사 업
		행정구역	편입면적 (km ²)	
합 계	542.23	1개읍 5개면 28개리	35.60	-
삼교읍	49.60	두리, 방아리, 평촌리, 월산리, 효림리, 신가리	5.05	· 삼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· 삼교 그린나우플라자
광시면	58.04	광시리, 시목리, 대리, 하장대 리, 가덕리	14.21	· 황새마을 조성사업 ·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
대흥면	35.76	교촌리, 동서리, 상중리	5.54	·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·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·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
응봉면	26.31	송석리, 주령리, 증곡리, 노화리, 운곡리, 후사리, 평촌리, 등촌 리, 건지화리, 신리	7.34	· 예당관광지 조성사업 ·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
덕산면	59.65	시랑리, 사동리, 신평리	2.79	· 덕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·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
오가면	32.29	월곡리	0.67	·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
그 외 지역	280.58	-	-	-

- 변경 : 해제(개발촉진지구 범위 35.60km² ⇒ 0km²)

3. 개발사업의 개요

- 당 초

사 업 부 문	사업규모	사 업 비	비고
합 계	A=4,469,751.5m ² L=7.56km	403,677	
문 화 · 관 광 사 업	A=1,189,143.5m ²	344,270	
1.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	A=724,185.5m ²	308,248	추진완료
2. 예당 관광지 조성사업	A=143,000m ²	9,300	추진완료
3.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	A=185,000m ²	8,172	추진완료
4. 황새마을 조성사업	A=136,958m ²	19,000	추진완료
생 활 환 경 개 선 사 업	A=3,203,906m ²	14,000	
5. 삼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	A=42,124m ²	10,000	추진완료
6.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	A=3,161,782m ²	4,000	추진완료
기 반 시 설 확 충 사 업	A=76,702m ² , L=7.56km	44,957	
7.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	L=0.7km, B=8→22m	5,240	추진완료
8. 삼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	A=26,389m ²	8,141	추진완료
9.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 조성	A=15,324m ²	4,688	미추진
10.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	느린호수길 L=4.7km, B=2~3m 휴게쉼터(4개소) A=14,913m ² 옛고을마당 A=12,110m ²	17,531	추진완료 (휴게쉼터 미추진)
11.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	주차장 A=6,558m ² 보행육교 L=60m	1,076	추진완료
12.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	도로 L=2.1km B=12m 휴게쉼터 A=1,408m ²	8,997	추진완료

- 변경 : 해제(개발사업 12개소 ⇒ 0개소)

4. 해제사유

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어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지역개발지원법)로 통합(시행 2015. 1. 1)
-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개발촉진지구(지역개발사업구역)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(지역개발

계획)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역개발계획,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실효 또는 지정해제·취소됨에 따라 금회 미추진 사업을 해제 고시하며,

- 또한, 지역개발지원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 해제 고시하고자 함.

5. 열람장소 : 예산군청 도시재생과

6. 열람기간 : 고시 익일로부터 14일간

7. 관계도서 : 열람장소 비치

8. 기타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(☎ 041-339-77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산군 고시 제2022- 78호

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승인 고시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,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,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『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』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3일

예 산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
2. 사업의 목적 :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,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
3. 주요사업내용
 - 가. 위 치 : 충남 예산군 봉산면 일원(거점지 : 고도리·구암리)
 - 나. 사업내용
 - (H/W) 봉산문화향유센터, 황금뜰 쉼터 조성
 - (S/W) 공동체 문화나눔 프로그램, 문화나눔 육성회 구성 및 운영, 지역발전 리더 교육 및 컨설팅, 운영지원, 제경비 등
4. 사 업 비 : 4,000백만원(국 2,800, 군 1,200)
5. 사업시행기간 : 2021년~2025년(5개년)
6. 사업의 효과
 -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·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(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)
7. 사업시행자 : 예산군수
8. 기타사항 : 관계서류열람(예산군청 농정유통과 ☎ 041-339-7567, 7570)

예산군 고시 제 2022 - 80호

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2차 변경 승인 고시

주식회사 이지개발산업 대표 박재근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4-1BL(삽교읍 목리 832번지)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「주택법」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5월 02일

예 산 군 수

1. 사 업 명 : 내포신도시 RH4-1BL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시행자
 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: 주식회사 이지개발산업 대표 박재근
 나. 주 소 :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7, 204호
3. 사업위치 :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H4-1BL (목리 832번지)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업계획승인변경(경미사항)승인	사업계획2차변경승인
주택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지면적 : 53,583.00㎡ ○ 연 면 적 : 168,864.12㎡ ○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○ 공급방법 : 민간분양분양 ○ 사업규모 : 주15동(지하2층,7~26층)/954세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3 형 (전용 73.17㎡) : 262세대 - 84A형 (전용 84.92㎡) : 352세대 - 84B형 (전용 84.97㎡) : 155세대 - 84C형 (전용 84.93㎡) : 185세대 ○ 사 업 비 : 311,882,720천원 5. 사업기간 : 2021.07.29. ~ 2024.03.30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지면적 : 53,583.00㎡ ○ 연 면 적 : 168,864.12㎡ ○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○ 공급방법 : 민간분양분양 ○ 사업규모 : 주15동(지하2층,7~26층)/954세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3 형 (전용 73.17㎡) : 262세대 - 84A형 (전용 84.92㎡) : 352세대 - 84B형 (전용 84.97㎡) : 155세대 - 84C형 (전용 84.93㎡) : 185세대 ○ 사 업 비 : 311,882,720천원 5. 사업기간 : 2021.07.29. ~ 2024.03.30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첨부] 변경세부내역</p>

5. 사업승인 : 2021.06.29. (2021-도시재생과-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1)/

1차변경(경미사항): 2021.10.14., 2차변경: 2022.05.02.

6.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: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

■ 세부내역

구 분		변경내용	변경사유
건 축	1층 층고	- 지상1층 단위세대 층고 변경 (2,890 → 2,900)	시공성 향상
	지하1층 커뮤니티 레이아웃 변경	- 커뮤니티(게이트볼장) 레이아웃 변경	이용성 향상
	지하2층 진입 홀 통합로비 적용	- 지하2층 진입 홀 통합로비 적용(6개동) (103, 104, 105, 108, 109, 110동)	편리성 고려
구 조	기초구조 변경	- 기초구조 변경 (지내력기초→파일기초) - 5개동(101, 102, 110, 111, 112동)	구조심의 의결내용 반영
	내진설계 적용	- 내진설계 적용 (6개동 - 감쇠장치(댐퍼))	
	비 고	- 구조안전심의 조치계획에 따른 구조도서 변경	

예산군 고시 제 2022-82호

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5 차 변 경 승 인 고 시

중봉건설주식회사 대표 신경식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H-3BL (삽교읍 목리 884번지)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「주택법」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5월 11일

예 산 군 수

1. 사 업 명 : 내포신도시 RH-3BL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
2. 사업시행자
 - 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: 중봉건설주식회사 대표 신경식
 - 나. 주 소 :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
3. 사업위치 :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H-3BL (목리 884번지)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업계획4차변경승인	사업계획5차변경승인
주택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지면적 : 54,658.40㎡ ○ 연 면 적 : 174,993.6711㎡ ○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○ 공급방법 : 민간분양 ○ 사업규모 : 주15동/부8동, 1,120세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9형(전용면적 59.9914㎡) : 285세대 - 73형(전용면적 73.9822㎡) : 245세대 - 84형(전용면적 84.9642㎡) : 590세대 ○ 사 업 비 : 366,720,413천원 ○ 사업기간 : 2021.10.04.~2024.09.03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지면적 : 54,658.40㎡ ○ 연 면 적 : 174,991.0766㎡ ○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○ 공급방법 : 민간분양 ○ 사업규모 : 주15동/부8동, 1,120세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9형(전용면적 59.9914㎡) : 285세대 - 73형(전용면적 73.9822㎡) : 245세대 - 84형(전용면적 84.9642㎡) : 590세대 ○ 사 업 비 : 366,720,413천원 ○ 사업기간 : 2021.10.04.~2024.09.03. <p>[첨부] 변경세부내역</p>

5. 사업승인일 : 2014.09.23. (2014-도시재생과-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1)
6. 변경승인일 : 1차변경 - 2014.02.24., 2차변경 - 2020.06.09., 3차변경 - 2021.07.09.,
4차변경(경미사항) - 2021.09.17., 5차변경 - 2022.05.11.
7.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: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

▣ 변경 상세내역(건축)

구분	변경 내용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사유
설계개요	건폐율	- 17.97%	- 17.93% (감 0.04%)	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에 따른 수정
	용적률	- 216.17%	- 216.17%	
	용적률산정용 연면적	- 117,253.2279㎡	- 117,250.6334㎡(감 2.5945㎡)	
	연면적	- 174,993.6711㎡	- 174,991.0766㎡(감 2.5945㎡)	
	건축면적	- 9,746.8294㎡	- 9,727.4041㎡(감 19.4253㎡)	
주동 및 지하주차 장	지내력기초를 파일기초로 변경	- 지내력기초 설계 303동,307동 308동 309동 310동312동, 313동, 314동 기초 700~950mm - 파일기초 설계 301동,302동,304동,305동 306동,311동,315동 기초 700~1,200mm 구조계산서 배근 오기 UHD19@300	- 303동,307동 308동 309동 310동312동, 기초형식 파일기초로 변경 기초 700~1,200mm 구조계산서 배근 UHD16@300	구조안전성 보강
		- 지하주차장 지내력, 파일기초 혼용설계 기초 700~950mm	- 지하주차장 파일기초 영역 추가 기초 700~1,200mm	
근린생활시설	캐노피 삭제 및 면적 오류수정	- 근린생활시설 지붕 라인 변경 -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총 바닥면적 : 1275.6249㎡ 지상1층 : 314.7725㎡ 지상2층 : 960.8524㎡ 캐노피 : 22.5284㎡(오류) PIT : 138.4771㎡ PD : 2.1748㎡ -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1124.0327㎡	- 근린생활시설 지붕 라인 변경 -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총 바닥면적 : 1273.0304㎡ (감 2.5945㎡) 지상1층 : 308.2399㎡ (감 6.5326㎡) 지상2층 : 960.7605㎡ (감 0.0919㎡) 캐노피 : 4.0300㎡ (감 18.4984㎡) PIT : 137.5410㎡ (감 0.9361㎡) PD : 2.2759㎡ (증 0.1011) -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1104.6074㎡(감 19.4253㎡)	면적 오류 정정 및 분양 모형 적용에 의한 변경

예산군 공고 제2022-953호

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경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5월 16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

-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「경관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경관법」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신설(안 제25조의2)
 - (도로)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
 - (하천시설)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
 - (공원, 교량, 육교, 조경공사)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
 - (야간조명 사업)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

4. 입법예고 기간

- 2022. 5. 16. ~ 6. 7.(23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도시재생과 (참조 : 주택팀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처 : 도시재생과 주택팀

- 주 소 : (우)32435,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

- 전자메일 : dldhtlq@korea.kr

- 기타 문의 : ☎041) 339-7724, FAX 041) 339-7709

라. 제출방법 및 문의처

○ 우편, 전자메일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주택팀(전화: 041-339-772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2.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3. 규제영향분석서 1부. 끝.

[붙임1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조례(안)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 성	반 대		

[붙임2]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)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 중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
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 중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
3. 「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」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대상 시설물 중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공원, 교량, 육교, 조경공사
4. 「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」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시설물 중 총 사업비가 2억 이상인 야간조명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5조의2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)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 중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</u> <u>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 중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</u> <u>3. 「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」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대상 시설물 중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공원, 교량, 육교, 조경공사</u> <u>4. 「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」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시설물 중 총 사업비가 2억 이상인 야간조명 사업</u>

[붙임3]

규제영향 분석서

I. 분석대상 규제 개요

1. 규제사무명 (관련 조항)	예산군 경관 조례 안 제25조의2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)					
2. 구 분	신설	○	강화		존속기한 연 장	
3. 소관부서 및 작성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관부서: 도시재생과 ○ 작 성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장: 박영산 - 팀장: 이순철 - 부서장: 윤찬기 - 담당자: 김준우 					
4. 근거법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관법 ○ 경관법 시행령 		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규제집단: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사업 제안자, 시행자, 경관협정 체결자, 지방자치단체 ○ 이해관계자: 군민 					
6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p>[신설(강화) 규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경관법」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도로)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- (하천시설)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- (공원, 교량, 육교, 조경공사)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 - (야간조명 사업)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 					
7. 규제의 존속 기한과 사유	「경관법」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 및 「예산군 경관 조례」 개정 전 까지					

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

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

가. 문제의 정의(배경과 원인)

- 「경관법」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,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저해

나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- 「경관법」제2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정하여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 필요

2.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

가.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

- 반대 의견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

나. 규제의 실현 가능성

- 실현 가능함

3.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

가.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: 불가함

나. 규제와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달성 가능여부: 불가함

다.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: 중복 없음

4.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

※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제시

가. 규제의 비용분석

- 소요비용 없음

나. 규제의 편익분석

-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의 시기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,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조성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즐길 수 있는 편익 발생

다. 비용·편익의 비교 및 검토

- 소요비용은 없으며,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편익 발생

5.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

가.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: 경쟁요인 없음

나.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: 기업 활동 저해 요소 없음

6.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

- 타 시도사례 : 충청남도 15개 중 예산군과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·군 조례개정 운영 중(금산군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 중)

7. 행정기구·인력 및 예산의 소요

- 별도의 행정기구·인력·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

8.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.

제2022-21호

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(3.5cm×4.5cm)과 학생증(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신분증 지참 동행)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 고 기 간 : 2022. 5. 13. ~ 2022. 5. 27.

2. 공고 대상자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주 소	발급기간	반송사유
1	조*정	2005-05-07	예산읍 벚꽃로 175-30, 105동 104호	2022.6.1. ~ 2023.5.31.	
2	이*민	2005-05-21	예산읍 창신로 55, 2동 701호	2022.6.1. ~ 2023.5.31.	
3	이*제	2005-05-28	예산읍 아리랑로 93-10, 105동 704호	2022.6.1. ~ 2023.5.31.	
4	김*우	2005-05-14	예산읍 산성공원3길 36, 104호	2022.6.1. ~ 2023.5.31.	
5	박*원	2005-05-11	예산읍 역전로 150-13, 202동 406호	2022.6.1. ~ 2023.5.31.	
6	김*빈	2005-05-04	예산읍 사직동길 37, 201호	2022.6.1. ~ 2023.5.31.	
7	강*성	2005-05-24	예산읍 교남길 54	2022.6.1. ~ 2023.5.31.	

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(문의전화 : 041-339-8432)

2022. 5. 13.

예 산 읍 장